



제 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보급 >

■ 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876호)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보급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재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12. 4.
3. 회 부 일: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Ⅲ. 검토의견

1.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보급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국가가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간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의3).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u>선수</u> 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 ----- ----- ----- <u>선수 및 체육지도</u> <u>자가</u> ----- -----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u>선수</u> 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 <u>선</u> <u>수 및 체육지도자와</u> ----- -----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상 국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소속 기관·단체의 장 간의 표준계약을 개발·보급하여야 하고, 소속 기관·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 고시)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와 ‘직장운동경기부 표준계약서(위·수탁계약서)’ 등 표준계약서 2종을 고시하고, 전국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 표준계약서 이행률을 매년 점검하고 있음.

[연도별 선수 표준계약서 이행률]

연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단체 (단위: 개)			표준계약서 이행률 (B/A)
	점검 단체 수 (전체 단체 수)	조사 참여 단체 수(A)	표준계약서 준수 단체 수(B)	
2022년	328	237	96	40.5%
2023년	326	273	117	42.9%
2024년	320	287	144	50.2%
2025년	326	278	178	64.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관련 규정이 없어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상 의무위반에 따른 조치가 어렵고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체육지도자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기관·단체의 장 간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지도자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선수의 인권침해가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경기도는 2023년 ‘선수 및 지도자’에 해당하는 ‘단원’이 성희롱·성폭력범죄 또는 폭력 등을 저지른 경우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한 바 있음¹⁾.

1)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도형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 [와,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 (이하 “단원”이라 한다) 은/는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이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단원으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권리구제 및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타 단원에게 폭력(괴롭힘)·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⑧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에게 폭행, 갑질, 집단따돌림과 같은 폭력(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성범죄 등의 방지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⑨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되면 경기도스포츠인권센터를 통하여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단원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② 단원은 자신이나 다른 단원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관리자 또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⑤ 단원은 제7조 제6항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단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 또는 폭력(괴롭힘) 등을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선수뿐 아니라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도 표준계약서의 보호를 받게 됨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가 공정하게 보장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참고로, 제22대 국회에서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2건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

[제22대 국회 체육지도자 표준계약서 관련 개정안 발의 현황]

제10조의3	현행	박덕흠의원안 (2210786)	조계원의의원안 (2211363)	김재원의의원안 (2214876)
(제1항)	선수-직장운동경기부 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국가)	<u>선수 또는 체육지도자- 직장운동경기부 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국가)</u>	<u>선수 및 체육지도자- 직장운동경기부 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국가)</u>	<u>선수 및 체육지도자- 직장운동경기부 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국가)</u>
(제2항)	-	계약 시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 포함(직장운동경기부)		
		<u>선수 대상 체육지도자의 인권침해행위가 계약해지사유임을 명시</u>	<u>인권침해행위가 계약해지사유임을 명시</u>	
(제5항)	-	-	<u>표준계약서 사용 시 국가 재정 지원 우대 가능</u>	
(제6항)	-	-	<u>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청취</u>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 의 처
02)6788-5375

※참고자료1: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통계

○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현황 (326개 단체, 842팀)

(단위: 개), 장애인팀 미포함 / '25년 12월 기준

구분	합계	공공기관			공공단체			체육 단체	일반 기업	국군 체육 부대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	특수 법인			
단체수	326	11	2	3	208	27	2	27	45	1
팀수	842	23	7	3	545	32	3	148	56	25

○ 지역별 현황('25년 12월 기준)

구분	팀 수	(비율)	구분	팀 수	(비율)	구분	팀 수	(비율)
서울	81	9.62	울산	17	2.02	전북	42	4.99
부산	47	5.58	세종	1	0.12	전남	44	5.23
대구	41	4.87	경기	151	17.93	경북	101	12.00
인천	45	5.34	강원	59	7.01	경남	50	5.94
광주	28	3.33	충북	43	5.11	제주	14	1.66
대전	36	4.28	충남	42	4.99	합계	842	100%

○ 지도자·선수 현황('25년 12월 기준)

지도자(명)				선수(명)			
남성팀 지도자	여성팀 지도자	혼성팀 지도자	계	남성팀 선수	여성팀 선수	혼성팀 선수	계
469	348	452	1,269	2,498	1,693	2,123	6,314

○ 계약 현황('25년 12월 기준)

- 정규직/비정규직(계약직) 현황

지도자(명)/비율(%)			선수(명)/비율(%)		
정규직	계약직+기타	계	정규직	계약직+기타	계
91(9.4%)	879(90.6%)	970(100%)	279(5.6%)	4,585(94.0%)	4,951(100%)

- 정규직/비정규직 계약 현황 상세

지도자							선수					
정규직	계약직 (계)	계약기간		기타	무응답	계	정규직	계약직 (계)	계약기간		기타	무응답
		1년 미만	1년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91	855	790	65	24	299	1,269	279	4,585	4,078	515	69	1,363

○ 종목별 현황

종목명		팀 수	비율 (%)	종목명		팀 수	비율 (%)
하계올림픽대회(32)		621	73.8	하계아시안경기대회(32+9)		41	4.9
1	축구	11	1.3	33	세팍타크로	14	1.6
2	배구	10	1.2	34	우슈	11	1.5
3	농구	5	0.6	35	스쿼시	11	1.3
4	골프(파크골프)	1(1)	0.1	36	소프트볼(야구)	5(1)	0.5
5	육상	90	10.8	37	가라데	0	0.0
6	레슬링	34	4.0	38	크라쉬	0	0.0
7	태권도	37	4.4	39	카바디	0	0.0
8	양궁	31	3.6	40	주짓수	0	0.0
9	수영(수구)	30(3)	3.6	41	e스포츠	0	0.0
10	역도	29	3.4	전국체육대회(49=30+4+15)		803	95.4
11	복싱	26	3.1	42	볼링	25	2.9
12	유도	30	3.6	43	씨름	25	3.0
13	사격	28	3.4	44	검도	26	3.0
14	자전거	28	3.3	45	소프트테니스	22	2.6
15	펜싱	27	3.1	46	롤러	15	1.6
16	탁구	26	3.0	47	당구	8	1.3
17	테니스	23	2.8	48	핀수영	8	1.2
18	배드민턴	25	3.0	49	보디빌딩	5	0.7
19	카누	19	2.1	50	수상스키웨이크보드	3	0.3
20	체조	17	2.1	51	에어로빅	3	0.3
21	조정	19	2.2	52	궁도	2	0.3
22	근대5종	16	1.9	53	바둑	0	0.0
23	핸드볼	14	1.6	54	택견	0	0.0
24	요트	11	1.3	55	합기도	0	0.0
25	철인3종	11	1.3	56	족구	0	0.0
26	하키	10	1.2	동계올림픽대회(7)		37	4.3
27	럭비	5	0.6	57	빙상	12	1.3
28	승마	2	0.3	58	컬링	9	1.0
29	산악(스포츠클라이밍)	3(0)	0.2	59	스키	5	0.6
30	댄스스포츠(브레이킹)	2(2)	0.3	60	바이애슬론	7	0.8
31	서핑	1	0.1	61	루지	1	0.2
32	스케이트보드	0	0.0	62	아이스하키	2	0.2
합계		842	100	63	봅슬레이스켈레톤	1	0.1

*무응답 종목: 기타 1개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종목
 : 비 전국체육대회 종목